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9

발의연월일: 2021. 5. 20.

발 의 자:양향자・윤재갑・임오경

윤영덕 · 조오섭 · 서삼석

임호선 • 전용기 • 민형배

이해식 · 위성곤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의 소비 증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영어조합법 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한을 당분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	법인세의 면제 등) ①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	
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u>20</u>	<u>20</u>
<u>21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를 면제한다.	<u>.</u>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2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u>2024년</u>
<u>12월 31일</u> 까지 받는 배당소득	12월 31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u>.</u>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3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u>202</u>
<u>1년 12월 31일</u> 까지 받는 소득	4년 12월 31일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 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 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 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 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 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 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4
2024년 12월 31일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⑥ (생 략)

•

⑤ • ⑥ (현행과 같음)